

---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제3자 보상액 공제 조항의 고찰

### (A study on the deduction clause to the payment by third party in automobile insurance)

---

신홍철\*  
Hongchul, Shin

---

#### <국문초록>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천777만대에 이르러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 니드의 증가와 보험의 역기능으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서도 상해보험에 속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실제 손해액 개념을 도입하여 피보험자의 이득금지를 실현하고자 약관을 계속적으로 수정·변경하여 왔다. 그러나 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제3자 보상액 공제조항을 신설하여 손해사정 실무적으로는 많은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판단, 결정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보험사업의 성장과 육성, 그리고 보험소비자가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국문색인어 : 자기신체사고, 상해보험, 제3자 배상액공제

---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제3종 대인·제4종 손해사정사

## I. 서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sup>1)</sup> 담보는 1979년 1월 1일 자동차자손보험이라는 독자상품으로 개발 시행되어 오다가 1983년 9월 14일 자동차보험에 편입<sup>2)</sup>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초기의 형태와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이른바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은 2011년 5월 17일 금감원 자동차보험팀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실제손해액 기준보상원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삽입된 조항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편입되어 이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계산할 때 제3자 배상액을 공제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실무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지닌 법적성질,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자동차상해와 관련하여 현행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제3자 공제조항의 유, 무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II.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법적성질

### 1.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발생요건과 보험금의 종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이 피보험자인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2)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 1997. p217-218

협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용, 치료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 그리고 치료중 또는 후유장해이후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법적성질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피보험자, 즉 자연인이라는 점에서 인보험<sup>3)</sup>이고 피보험자의 우연한 신체상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상해보험<sup>4)</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의 종류에서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두고 있으며 상해보험이라 할지라도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실손보험의 성격을 가진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부정액보험 즉,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인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 당시에 미리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정액의 급부를 정하고 있는 이상 사망보험과 장해보험금은 정액보험의 형태를 가진 상해보험을 그 법적성격으로 볼 수 있다.<sup>5)</sup>

## III.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의 효력

- 3) 상법제727조-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다.
- 4) 상법제737조-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다.
- 5) 최정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관한 고찰, 계간 손해사정사, 2007. p29

### 1. 실제 손해기준의 문제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행 약관체계에서는 제 3자 배상액 공제조항의 문제점으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차량의 운전자(배상의무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표1을 통하여 살펴보면,

<표1> 상대방의 과실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구 분                    | 피보험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
|------------------------|-------------------|---|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 1.5억원             | 1.5억원                                     |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        | 1억원               | 1억원                                       |
| 상대방의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받은 금액 | 8천만원              | 8천만원                                      |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은 금액      | 5천만원              |   |
| 상대방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                   | 5천만원                                      |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지급 가능보험금   | 2천만원              | 7천만원                                      |
| 피보험자가 수취한 총 금액         | 1.5억원             | 2억원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1.5억원,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 가입금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대인배상 I 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제3자 배상액)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고 또한 상대방의 대인배상 I 으로부터 피보험자가 8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2천만원(실제손해액1.5억원-산재보험금 5천만원-상대방의 대인배상 I 보험금 8천만원=2천만원)이 되며 피보험자가 수취한 돈은 총 1.5억으로 실제손해액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가정에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을 청구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형사합의금)로서 5천만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대인배상 I 으로부터 피보험자가 8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7천만원(실제손해액1.5억원-상대방의 대인배상 I 보험금 8천만원=7천만원)이 되며 피보험자가 수취한 돈은 총 2억원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1.5억원을 초과한 5천만원이 초과이익으로 존재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상기 (표1)에서 확인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취지라면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이외에 배상의무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에게는 실제 손해액(1.5억원)보다 많은 배상(보상)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이외에 배상의무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도 공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 2. 제3자에게 보상 받기 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배상의무자에게 지급 받은 것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편입하여도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받기 전에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업무중에 단독의 자동차사고로 사상된 경우 보험자는 그때에도 공제를 주장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2011년 5월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보험자가 업무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수령후에도 산재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였다.<sup>7)</sup>

하지만 개정약관에는 분명히 “제3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6) 김광국, 자동차보험약관 조항별 문제점 및 개정방안, 한국손해사정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p35~40

7)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판결

만약 그렇다면 약관 규정을 “제3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 또는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약관으로 개정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을까?

자기신체사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성격으로 인보험이며 상해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금하고 있다<sup>8)</sup>9) 따라서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편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보험자 대위권을 인정하게 되는 모순을 지니게 되므로 자기신체사고가 실제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먼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대위하지 않는다’라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대위권 배제조항을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대위<sup>10)</sup>는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뿐 보험금을 지급하기전에는 사전대위를 할 수 없음이 법문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대위권행사조항의 삽입과 배상의무자에게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배상의무자이외의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하여도 사전대위문제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자동차보험의 다른 담보종목과 비교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유사하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를 담보하고 있는 자동차상해<sup>11)</sup> 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sup>12)</sup>담보가 존재하며 이

8) 상법제729조-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9) 대법원 2008. 6.12. 선고2008다8430판결

10) 상법제682조-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범위를 확장한(다만, 보험금 산정방식과 한도액 및 보험료 액수 등에서 차

들 역시 인보험적 요소를 가진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파악하고 있고<sup>14)</sup>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도 우리 대법원은 그 법적성질을 상해보험으로 하면서도<sup>15)</sup> 그 보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실손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과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은 물론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위권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보험내에서 그리고 동일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를 담보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는 인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이기는 하지만 손해보험적 성질 즉 실손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조항과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조항을 들으로써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자기신체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불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가 있을 뿐이다.) 상해보험으로 보상책임발생 요건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1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13) 박은경,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한국손해사정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p15

1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배상의무자에게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법적성격을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라 할 수 있고<sup>16)</sup> 이러한 상해보험에서 배상의무자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sup>17)</sup>이 되므로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sup>18)</sup>

## 2. 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 3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이른바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득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손기능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만약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동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1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17) 최정현, 앞의 책, p33~34

18) 유사판례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1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 28245. 판결



## V. 결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의 단독사고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차량이 무보험일 경우 피보험자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된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실손보상의 개념을 도입하는 형태로 변모하면서 약관을 수정하여 왔고 2011년 5월 자동차보험을 약관을 개정할 때 최종적으로 제3자 배상액 공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상해보험 본래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불완전한 실손보험형 상해보험의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배상의무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단지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상해보험 또는 실손보상의 이름으로 존재하기에는 그 약관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자기신체사고 대위권 배제 약관을 지니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개발·시행취지를 반추하여 향후 조속한 시일내 보험자와 보험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 1997.

이재복·양해일, 보험계약법, 두남, 2010.

양승규, 보험법(제4판), 삼지원, 2002.

최정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관한 고찰, 계간손해사정사, 2007.

박은경,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한국손해사정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김광국, 자동차보험약관 조항별 문제점 및 개정방안, 한국손해사정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1.

삼성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2013.